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(월별)내역 [주택마련저축]

(조회기간: 2020년 01~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고길동	750101-*****		

■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(단위:원)

취급기관(사업자	번호)	1월	2월	3월	4월	
저축구분	계좌번호	5월	6월	7월	8월	납입금액 계
저 축 명	가입일자	9월	10월	11월	12월	
QQ 은행(617-19-6	8038)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
청약저축	431807****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,200,000
청약저축	1981-05-28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
TT은행(209-06-32	493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
주택청약종합저축	527107****	50,000	50,000	0	0	600,000
주택청약종합저축	2018-06-16	0	0	300,000	0	

- 1. 공제대상 :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,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(청약저축,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,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)의 40%(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)
- ※ 2014.12.31.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
- ※ '09.12.31.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(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)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
- ※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
- ※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 단,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
- 2. 공제한도 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

일련번호: 20201222-0133005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(월별)내역 [주택마련저축]

(조회기간: 2020년 01~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고길동	750101-*****		

■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(단위:원)

취급기관(사업자	번호)	1월	2월	3월	4월	
저축구분	계좌번호	5월	6월	7월	8월	납입금액 계
저 축 명	가입일자	9월	10월	11월	12월	
MM은행(310-06-8	9734)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
주택청약종합저축	365910****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,200,000
주택청약종합저축	2009-05-12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
합계						3,000,000

- 1. 공제대상 :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,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(청약저축,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,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)의 40%(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)
- ※ 2014.12.31.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
- ※ '09.12.31.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(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)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
- ※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
- ※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 단,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
- 2. 공제한도 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

일련번호 : 20201222-0133005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